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3. 03. 25

개정 2016. 12.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 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 (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 (방문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7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 적정성 원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면담, 질문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투자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제9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장 투자권유

제10조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4]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 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장외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라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 (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마. 투자자(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신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 (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4-3장 설명의무

제13조 (설명 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별지 제3호]를 통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가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5.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회사는 만75세 연령을 초과하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관계법규 및 자신이 마련한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4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위험도를 [별표 3]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 정량적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 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 위험, 조기상환 가능성 및 유동성 등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5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7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에 한함)
 - 아.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차.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8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19조 (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 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 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로만 운용하는 경우(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 정보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 및 제 4-93 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 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유효기간(36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새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정보 구분	☐ 신규등록	☐ 정보변경	☐ 기존 정보와 동일
전문투자자 여부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5 항)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여부	☐ 해당없음	☐ 해당 (법인명:)	

※ 투자자 정보확인 PART 1 (기초정보) : 개인

대분류	질 문 내 용
연령	☐ 19 세이하 ☐ 20 세 ~ 40 세 ☐ 41 세 ~ 50 세 ☐ 51 세 ~ 65 세 ☐ 65 세이상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일임계약 불가)
1. 재산상황 ※()안은 배점	ㄱ. 월소득 현황 ☐ 300 만원 이하 ☐ 500 만원 이하 ☐ 700 만원 이하 ☐ 1,000 만원 이하 ☐ 1,000 만원 초과 ㄴ.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 (5)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3)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1) 현재 연금이 주 수입원이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음 총 자산규모(순자산) ☐ 5 억 이하 ☐ 10 억 이하 ☐ 30 억 이하 ☐ 50 억 이하 ☐ 50 억 초과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50% 이하 ☐ 50% 초과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 단기 : 1 년 미만 (주식, 파생상품 투자일임계약 불가) ☐ 단·중기 : 1 년 이상 2 년 미만 ☐ 중기 : 2 년 이상 3 년 미만 ☐ 중·장기 : 3 년 이상 5 년 미만 ☐ 장기 : 5 년 이상
2. 투자경험 ※()안은 배점 : 중복응답 시 최고점 적용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 가능) ☐ (2)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4)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6)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펀드 등 ☐ (8)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10)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 (1) 전혀 없음 ☐ (2) 1 년 미만 ☐ (3) 3 년 미만 ☐ (4) 5 년 미만 ☐ (5) 5 년 이상
3.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안은 배점	☐ (3)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6)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음 ☐ (8)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의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10)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4. 투자목적 ※()안은 배점	☐ (4) 여유자금의 단순 투자목적 ☐ (8) 은행예금, 적금 등의 기대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목적 ☐ (10) 적극적 자산증대를 위한 투자목적
5.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안은 배점	☐ (0)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주식, 파생상품 투자일임계약 불가) ☐ (5)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 (8)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 (10)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음

※ 투자자 정보확인 PART 1 (기초정보) : **법인**

대분류	질 문 내 용
1. 재산상황 ※()안은 배점	ㄱ. 자본금 규모 ☐ 10 억 이하 ☐ 30 억 이하 ☐ 50 억 이하 ☐ 100 억 이하 ☐ 100 억 초과 ㄴ. 향후 법인 수익에 대한 예상 ☐ (5) 현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3) 현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1) 현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총 자산규모(순자산) ☐ 10 억 이하 ☐ 30 억 이하 ☐ 50 억 이하 ☐ 100 억 이하 ☐ 100 억 초과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50% 이하 ☐ 50% 초과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 단기 : 1 년 미만 (주식, 파생상품 투자일임계약 불가) ☐ 단·중기 : 1 년 이상 2 년 미만 ☐ 중기 : 2 년 이상 3 년 미만 ☐ 중·장기 : 3 년 이상 5 년 미만 ☐ 장기 : 5 년 이상
2. 투자경험 ※()안은 배점 : 중복응답 시 최고점 적용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 가능) ☐ (2)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4)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6)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펀드 등 ☐ (8)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10)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 (1) 전혀 없음 ☐ (2) 1 년 미만 ☐ (3) 3 년 미만 ☐ (4) 5 년 미만 ☐ (5) 5 년 이상
3.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안은 배점	☐ (3)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6)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음 ☐ (8)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의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10)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4. 투자목적 ※()안은 배점	☐ (4) 여유자금의 단순 투자목적 ☐ (8) 은행예금, 적금 등의 기대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목적 ☐ (10) 적극적 자산증대를 위한 투자목적
5.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안은 배점	☐ (0)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주식, 파생상품 투자일임계약 불가) ☐ (5)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 (8)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 (10)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음

※ 투자자 정보확인 PART 2 (투자자 유형)

PART1(기초정보)에 의하여 산출한 고객 님의 투자자 유형 입니다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 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 투자자 정보확인 PART 3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해당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증권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명 :) ☐ 본인은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가 본인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본인이 개재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지 않음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고객명 : (인) (위 고객의 대리인) : (인)	

※ 해당고객만 기재

※ 투자자 정보확인 PART 4 (분기별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방법)

투자자 재산상황 등 확인방법	☐ 대면 ☐ 유선 ☐ 서면 ☐ 전자우편 ※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님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대면, 유선의 방법으로 확인하되, 고객님의께서 원하시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변경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투자자 정보확인 PART 5 (취약 금융소비자 대상 확인절차)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함을 (설명 받았습니다) ※()안 자필기재
고객명 : (인) (위 고객의 대리인) : (인)	

※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만 기재

[별표 1]

투자자정보에 의한 Scoring 및 투자자유형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유형을 아래의 5 단계로 분류

■ 20점 이하 : 안정형
■ 20점 초과 25점 이하 : 안정추구형 ■ 25점 초과 30점 이하 : 위험중립형
■ 30점 초과 40점 이하 : 적극투자형 ■ 40점 초과 : 공격투자형

※ 1~5 번 항목의 체크점수를 합산한 결과치 기준 (총 50 점).

▶ 투자자 유형별 세부내용

Part1(기초정보)에 의하여 산출한 고객님의 투자자 유형입니다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 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별표 2]

투자자유형별 투자위험 및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분류기준

구분	Scoring	투자위험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공격투자형	41점~50점	초고위험	- 주식형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 파생상품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적극투자형	31점~40점	고위험	- 주식형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투자자산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 가능)
위험중립형	26점~30점	중위험	- 주식채권혼합형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안정추구형	21점~25점	저위험	- 채권형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안정형	20점 이하	초저위험	- 원금보장형 상품

[별표 3]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회사채 (A- 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그 외 주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별표 4]

적합성 판단기준

구 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 위 투자유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정기간이 단기일 경우 투자일임계약 체결 불가함

[투자유형과 세부자산 배분유형]

구 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자산배분 유형	Active 형	Active 형			
	Passive 형	Passive 형			

투자자정보 확인 및 내용설명 체크리스트

이 자료는 고객님의 회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 확인 및 당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확인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임직원에게 다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주요내용 등 설명확인

- ☐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 드린 것입니다.
- ☐ 향후 **36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도 된다는 점을 공지 받았습니다.
- ☐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귀사는 본인의 투자목적이나 경험 등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일임)을 권유하였습니다.
- ☐ 본인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개념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본인은 금융투자상품(일임)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투자자유형 및 투자위험등급이 아래와 같이 분류됨을 설명 받았습니다.
 - 투자자 유형 :
 - 투자위험 등급 :
- ☐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대하여 구분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 ☐ 일임계약은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받았습니다.
- ☐ 위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대해 본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 ☐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 ☐ 본인은 귀사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 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일체 : ☐ 대면 ☐ 우편 ☐ E-Mail
 - 투자일임보고서, 투자성향확인 : ☐ 대면 ☐ 우편 ☐ E-Mail

▶ 고객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통지**).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안 자필기재

20 년 월 일

고객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위 입 장

◆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 귀중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내용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 계약서 및 계약관련 부속 서류의 작성 ☐ 개인(신용)정보 필수동의서의 작성		
대리인 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의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를 위한 대리인의 신분 확인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대리인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인과의 관계)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리인의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금융)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귀사가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대리인) : _____ (서명 또는 인)			

본인(위임인)은 상기 내용의 거래에 대하여 위 대리인에게 그 행위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위임인) : _____ (인)

■ 서명(인)란 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
2. 위임자의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